

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배현경의원 외 9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배현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군용비행장의 비행훈련 등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·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-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이은진의원 외 9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이은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01년 화성시 시 승격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“화성시 시민의 날”의 운영과 관련하여 100만 특례시 출범과 발맞춰 시민 인식 강화 및 시민 참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격에 맞는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화성시민주간 신설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제2항)
-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·면제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1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과 정지영)

가. 제안이유

- 시장과 출장소장 및 읍·면·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스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 및 읍·면·동장의 중계민원담당원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토록 하였으나, FAX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중계민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“중계민원전용” 공인을 폐기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부위임되어 사용한 소속기관의 “중계민원전용” 공인 조항 삭제 (안 제2조제5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조문 정비를 통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오문섭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오문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‘공공자금’ 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·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3조)
-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자금운용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통·리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 우정숙)

가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, 조례 상 통·리·반의 지 번오류(누락)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(통·리·반)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별표 1 개정안

- 봉담읍 상14리(9개 반), 상15리(8개 반) 신설
- 향남읍 상신12리(8개 반), 상신13리(11개 반) 신설
- 비봉면 삼화2리 및 3리 관할구역 조정, 삼화6리(5개 반), 삼화7리(11개 반), 삼화8리(6개 반), 삼화 9리(8개 반), 삼화10리(10개 반), 삼화11리(7개 반), 삼화12리(10개 반) 신설
- 송산면 삼존1리 관할구역 표기정정 및 1개 반 신설
- 진안동 능9통 신설, 진안11통, 능2통, 능4통부터 8통까지, 기산5통부터 8통까지 표기정정
- 반월동 19통부터 26통까지 표기정정
- 동탄6동 오산31통 신설
- 동탄9동 신1통 10개 반, 신2통 3개 반 신설 및 관할구역 표기정정, 신7통부터 9통까지 신설

○ 별표 2 개정안

- 봉담읍 상리 통리장 정수 2명 증원
- 향남읍 상신리 통리장 정수 2명 증원
- 비봉면 삼화리 통리장 정수 7명 증원
- 진안동 능동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- 동탄6동 오산동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- 동탄9동 신동 통리장 정수 3명 증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재산관리과 김향겸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,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“환경친화적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” 신설(안 제20조의2제3항제1호의2 신설).
- “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” 재산의 대부 요율 규정 신설(안 제28조제4항제7호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김영수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19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김영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시책반영, 특별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홍보·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-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화성시 균형발전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